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신용보증 등으로 확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법률 제17619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 규정(안 제7조 제1항)

나. 신용보증의 내부 승인절차 규정(안 제7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격한 물동량 및 해운항만업 매출 감소 등으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증 대상
2. 보증 규모
3. 보증 기간
4.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업무)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을 말한다.</u>	<u>제7조(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급격한 물동량 및 해운항만업 매출 감소 등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u> <u>2.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1. 보증 대상</u> <u>2. 보증 규모</u> <u>3. 보증 기간</u>

4.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외 정책금융기관·연구기관 등
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을
말한다.